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2009. 09. 01. 최초제정

2012. 08. 01. 부분개정

2020. 12. 01.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 및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 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 및 실시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식재산권 및 실시 보상 등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본 대학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교직원에 의해 생성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4.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
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그 외 신지식재산권 및 그러한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Know-how 등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6. “Know-how”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를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7. “실시보상”이라 함은 본 대학의 연구 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 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교직원 등에게 보상함을 말한다.

제4조(권리의 승계) ①본 대학의 산학협력단(이하 “산학단”이라 한다)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발명에 의한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 한다. 그러나 산학단이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교직원 등이 외부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출원 또는 등록한 직무발명의 경우 산학단은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 한다.

제5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①산학단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여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장 신고 및 출원

제6조(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학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별지 1호 서식]
2. 양도증[별지 2호 서식]
3. 선행기술자료 조사서[별지 3호 서식]
4. 발명 내용 설명서(명세서) [별지 4호 서식]

② 발명신고서를 받으면 산학단장은 의견을 첨부한 후,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제7조(승계 등의 결정 및 통지) ① 산학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발명에 대하여 그 권리를 승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단, 연구 또는 사업 등의 계획에 따라 발생된 지식재산권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승계할 수 있다.<개정 2020.12.01.>

② 산학단장은 제1항의 결정을 자체 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제2호의 서식인 양도증에 의해 자체 없이 그 권리를 산학단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산학단장은 제8조의 양도증서를 받은 즉시 산학단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한다.

제10조(출원의 제한)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학단이 특허를 받을 권리가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교직원 등으로 재직한 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학에서 그가 맡았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출원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산학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산학단장은 보안상 또는 기밀누설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허출원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제11조(특허권의 승계) 교직원 등이 취득한 특허권을 산학단이 승계할 경우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특허 출원비용) 산학단이 제7조제1항에 의한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에 국내 특허 출원 비용과 등록비용 및 관리 비용은 산학단이 전액 부담하며, 특허 관련비용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출원인에게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3장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제13조(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직무발명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단장이 되며,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단,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해당분야 및 관련분야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발명을 승계 할 것인지의 여부
3. 발명의 국내외 출원 여부
4. 직무발명 및 실시보상 관리규정의 개폐
5. 기술실시 계약 및 보상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의사결정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경미한 사항을 서면결의에 부의 할 수 있다.

③ 표결의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는 회의 시 발명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산학단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유지한다.

제4장 기술 실시 계약

제19조(사전협의) ① 산학단이 단독 혹은 타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용 권리를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외부 제3자(이하 “실시예정자”라 한다)가 사용·활용 및 기업화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당해 발명자와 함께 동 실시예정자와 접촉하여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조사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② 위원장 및 발명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시 실시예정자와 기술의 수준과 단계, 제품의 시장성 및 경제성, 활용의 난이성, 기술이전 및 훈련의 범위, 적정 로열티 수준 등을 협의하고, 실시예정자의 사업 및 경영능력, 의욕 등을 판단하여 성공적인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실시계약 관련자료(검토의견 포함)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전 심의토록 해야 한다.

제20조(계약체결) 산학단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감안하여 실시예정자와 로열티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21조(기술료) 로열티 계약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1. 실시권의 종류 : 전용 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수요, 시장규모, 실시조건, 투자 연구비의 상환 가능성을 검토하여 통상 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2. 기술료는 계약체결에 따른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매출액 대비 정율(%) 또는 정액)로 구분한다.
3. 실시기간 : 실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되 타 법령 등의 규정, 제품 또는 기술의 수명, 기술수준, 시장성, 외국기술 비교결과 등을 검토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특례) ① 실시자가 자금 영세 등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술료를 일부 인하 조정하여 재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산학단은 실시자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경영능력, 사업의 폭, 시장성 등을 판단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① 실시자가 산학단의 기술자체가 기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산학단에 계약을 해지 요청하는 경우 실시자의 요구 및 주장사항과 동 건에 대한 발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산학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자에게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2.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 할 경우

③ 계약해지의 경우 실시자는 사후 연구결과 비밀누설 방지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후 실시자 및 그 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가 산학단의 허락 없이 동 연구결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계약이 해지된 실시자가 이를 게을리 하여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기술보증 및 배상) 발명자 또는 산학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술실시업체와 로열티 계약시, 산학단의 기술 수준 이상으로 동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산학단의 귀책 해약 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장 기술료 수입 및 사용

제25조(기술료 수입금의 구분)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주도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 정부주도 연구사업에 따라 참여기업에 기술이전 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의 기술료
2.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 산업체 수탁연구, 자체 연구 등 상기 1호 이외의 기술료와 관련 없는 경우의 기술료

제26조(기술료의 사용) ①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1. 정부주도연구과제 : 사업주관 해당부처의 규정에 따라 사용. 단, 정부출연금 이상으

로 정수된 기술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수탁 및 기타과제에 준하여 사용한다.

2.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연구과제 : 기술이전 관련비용, 보상금 지급, 교직원의 복리증진 또는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②연구비 재원이 혼합되어 발생한 기술료 수입은 정부주도연구과제, 일반수탁 연구 및 기타 연구과제로 구분하여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

제27조(사용절차) ①수입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공제한 후보상금 지급과 제2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②기술료 중 대학지분은 매년 회계연도 말에 결산 후 기술이전금으로 적립한다.

제6장 보상금

제28조(보상금의 지급) ①산학단은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발명자 보상금 : 70%

2. 산학단 : 20%

3. 발명자가 추천하는 학과(전공)와 연구소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 10%

②정부주도 연구과제 또는 외부지원발명 등에 있어서 보상금 배분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③발명자가 제 1항의 실시 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29조(발명자의 지분) ①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발명자 공동의 명의로 각자의 지분을 산학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없는 경우에 발명자의 각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분 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명자간의 동의를 거쳐 조정된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30조(지급시기) 보상금의 지급은 기술료 입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제3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 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특허가 모인에 의한 발명으로 인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직무의 관장)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서 산학단장이 관장한다.

제7장 보축

제34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산학단에 양도하겠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따라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단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심사·심판·소송·기타 처분 및 실시를 위하여 산학단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36조(비밀의 유지) ①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② 교직원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학단이 승계 하되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고 연구기밀로서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하기로 결정한 발명에 대하여는 산학단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특허권의 권리존속여부) 산학단은 본 규정 또는 기타 개별계약에 의하여 산학단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특허권 등록년도의 다음 회계연도 기준 5년 경과 후에 위원회에서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심사하여 특허권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 또는 포기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발명자의 의사에 따라 계속 보유할 경우 발생되는 유지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한다.<개정 2020.12.01.>

제38조(외국출원 발명의 취급) 해외 특허관련 제 비용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9조(기타의 산업재산권) 실용신안·상표·의장 등 기타의 산업재산권에 관하여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직무발명 및 실시보상 관리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업무에 대하여서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결 재	담 당	팀장	단장	부총장	총장

발 명 신 고 서					
발명의 명칭					
발명자	발명자	지분(%)	소속		전화번호
	(인)				
관련 연구과제	과제번호 (지원기관)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출원희망국					
발명의 기술적 특징					
관련기업	국내		국외		
발명의 공개여부	<input type="checkbox"/> 논문발표 <input type="checkbox"/> 학술지게재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발표일 : 200 년 월 일 ※ 첨부 : 발표내용(발표일, 학술지명 등) 사본				
특허부서의견					

상기의 발명을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신고하오니 승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고자 : (인)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 상기 발명이 공개(논문, 학술지게재 등)된 경우에는 발표내용사본 1부 첨부
- 첨부 : 1. 양도증 1부
 2. 명세서 1부.
 3. 발표내용사본 1부(공개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양 도 증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양도인	성명	①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①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①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①	주민등록번호
양수인	성명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2동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p>위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 ①</p> <p style="text-align: center;">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p>			

[별지 제3호 서식]

선행기술자료 조사서(국내·국외)		
1. 산업재산권(관련기술 분야 기존특허 등) 조사 [특허청(자료열람실), KIET특허정보(D/B) 등 이용]		
기 존 특 허 제 목. 특허번호, 일자 등	본 발명의 어떤 점이 새로운가? (신규성)	본 발명의 진보성 또는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가? (진보성)
2. 참고문헌, 학회지 등		
문헌 명, 저자 폐 이 지 등	문헌내용 (본 발명과 관련된 요점만 간략히)	참고문헌과 비교하여 본 발명의 특징은 무엇인가?

[별지 제4호 서식]**발명 내용 설명서 (명세서)****1. 【발명의 명칭】****2. 【도면의 간단한 설명】****3. 【발명의 상세한 설명】****가. 【발명의 목적】**

(1)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 기술】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나. 【발명의 구성】

(1)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2) 【기능 및 작용】

(3) 【실시 예】

(4) 【기타】

다. 【발명의 효과】**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청구항 2】

【청구항 3】